

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

의안 번호	4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10일
발 의 자 : 이주용 의원
찬 성 자 : 박찬원, 지광천,
장문혁, 심현정,
이명순 의원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,
 - 2022. 6. 1.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하반기(9월·10월)로 변경하고자 하며,
- 변경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에서 따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

당 초	변 경
2022년 6월 10일	2022년 9월 · 10월 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【관계법령】

□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

제7조(집회시기 변경) ① 의장은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·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.